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직업안정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고용노동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정부가 민간과의 공동사업 등을 할 수 있는 대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을 개선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사무실을 갖추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같은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민간과의 공동사업 등 대상기관의 범위 확대(안 제2조의3)

정부가 직업을 소개하는 업무 등을 공동으로 또는 위탁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의 범위에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을 추가함.

나.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개선(안 제21조)

- 1)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려는 법인이 갖추어야 할 일정 자격
· 경력을 갖춘 임원의 수를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하고, 노동조합 업무전담자,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경력자,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자 등 직업소개·상담업무와 연관성이 낮은 사람에 대해서는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2) 고급·전문인력에 한정하여 소개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제출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함.

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준수사항 정비(안 제25조)

사무실을 갖추지 않고 고급·전문인력에 한정하여 소개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급·전문인력이 아닌 구직자를 구인자에게 소개하면 안 된다는 준수사항을 추가함.

라.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개선(안 제28조)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광고문에 취업추천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할 준수사항 및 이력서 발송 대행 취업추천서 발급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도록 준수사항에 명시함.

마.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등의 예치금 규모 정비(안 제34조의2)

사무실을 갖추지 않고 고급·전문인력에 한정하여 소개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에 그 금액을 5천만원으로 규정함.

바. 반복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명확화(안 별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의 부과처분을 부과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제2호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허가 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을 “1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으로, “2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를 “1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나.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의한 공인노무사

제21조제1항제2호 중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라.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직업상담·직업지도·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다. 조합원이 100명 이상인 단위 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노동조합업무전담자

라.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무관리업무전담자

제21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고급·전문인력에 한정하여 소개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제21조제5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것
2.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및 사업자 명의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등록 신청서에 기재할 것

제25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고급·전문인력이 아닌 구직자를 구인자에게 소개하지 말 것(제21조제5항 단서에 따라 고급·전문인력에 한정하여 소개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2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3.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를 것
- 제34조의2제1항 본문 중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사업소별로 1천만원,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1억원,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는 2억원”을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 등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 사업소별로 1천만원. 다만 제21조제5항 단서에 따라 사무실을 갖추지 않고 고급·전문인력에 한정하여 소개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5천만원
2.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 1억원. 다만 국외 연수생만을 소개하는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경우에는 5천만원

3.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 2억원

별표 제1호가목 후단 중 “경우”를 “경우 기간의 계산은”으로, “한 날과”를 “받은 날과 그 처분 후”로,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영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의3(민간과의 공동사업 등의 지원) ①법 제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2조의3(민간과의 공동사업 등의 지원) ①-----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신설>	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허가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요건 등)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요건 등) ① ----- ----- ----- ----- -----. ----- ----- -----

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 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으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둘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사업소 1개소당 2천만원을 가산한 금액)이상이고 임원 2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국민 평생 직업 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훈련법인으로서 임원 2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2.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

----- 1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

----- 1
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나.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의한 공인노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

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단체에서 직업상담·직업지도
·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3.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
을 가진 자.

----- 사람

가.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
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
발훈련시설

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
교

라.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으로서 직업상담
· 직업지도·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
이 있는 사람

가.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
무원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
른 사회복지사

다. 조합원이 100명 이상인
단위 노동조합, 산업별 연

	<u>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u> <u>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u> <u>노동조합업무전담자</u>
	<u>라. 상시사용근로자 300명 이</u> <u>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u> <u>노무관리업무전담자</u>
4. <u>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u> <u>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u> <u>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u> <u>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u> <u>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u> <u>이 있는 자</u>	<삭 제>
5. <u>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u> <u>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u> <u>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u> <u>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u>	<삭 제>
6. <u>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u> <u>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u> <u>이 있는 자</u>	<삭 제>
7.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u>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u> <u>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u> <u>상인 자</u>	<삭 제>
8.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u>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u> <u>람</u>	<삭 제>

② (생략)

③·④ 삭제

⑤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후단 신설>

<신설>

<신설>

⑥ (생략)

제25조(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7. (생략)

<신설>

② (현행과 같음)

⑤ -----

-----고용노동부령으로-----.

다만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고급·전문인력에 한정하여 소개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것

2.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및 사업자 명의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등록신청서에 기재할 것

⑥ (현행과 같음)

제25조(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 -----

-----.

1. ~ 7. (현행과 같음)

8. 고급·전문인력이 아닌 구직

8. (생략) 제28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2. (생략) 3. <u>직업정보제공매체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광고문에 “(무료)취업상담”·“취업추천”·“취업지원”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u> 4. <u>구직자의 이력서 발송을 대행하거나 구직자에게 취업추천서를 발부하지 아니할 것</u> 5. 6. (생략) 제34조의2(예치금의 예치 및 인출 등) ① 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u>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사업소별로 1천만원,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1억원,</u>	<u>자를 구인자에게 소개하지 말 것(제21조제5항 단서에 따라 고급·전문인력에 한정하여 소개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의 경우로 한정한다)</u> 9. (현행 제8호와 같음) 제28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 ----- -----. 1. 2. (현행과 같음) 3. <u>구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를 것</u> <삭 제> 5. 6. (현행과 같음) 제34조의2(예치금의 예치 및 인출 등) ① ----- ----- <u>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 등은 다음 각호의 금액-----</u>
--	---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는 2억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한다. 다만, 국외 연수생만을 소개하는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경우에는 5천만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 ⑤ (생략)

----- . <단서 삭제>

1.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 사업소별로 1천만원. 다만 제21조제5항 단서에 따라 사무실을 갖추지 않고 고급·전문인력에 한정하여 소개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5천만원

2.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 1억원. 다만 국외 연수생만을 소개하는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경우에는 5천만원

3.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 2억원

② ~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7393